

인성 및 봉사 교과에 관한 운영규정

(제정) 2016-09-05 규정 제419호

(개정) 2022-04-25 규정 제601호

(개정) 2023-12-01 규정 제66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된 인성 및 봉사 교과의 운영과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04.25.>

제2조(운영목적) 인성 및 봉사 교과는 학생들의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험학습을 통하여 인성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대학의 학훈인 진리·창조·봉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덕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.<개정 2022.04.25.>

제3조(운영영역) 인성 및 봉사 교과 영역은 본교의 핵심역량인 배려와 소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<개정 2022.04.25.>

1. 예술 활동<개정 2022.04.25.>
2. 체육 활동<개정 2022.04.25.>
3. 학술문예 활동<개정 2022.04.25.>
4. 진로심리상담 활동<개정 2022.04.25.>
5.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활동<개정 2022.04.25.>

제4조(교과운영) 인성 및 봉사 교과는 본교의 인재상 및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, 공통 참여 프로그램과 자율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22.04.25., 2023.12.01.>

- ① 교과의 개설은 학과 단위로 하며, 소속 학과 지도교수가 담당한다.<개정 2022.04.25.>
- ② 인성 및 봉사는 교양 교과로 편성하며, 이수 학점은 1학점, 운영 시수는 15시수로 한다.
<개정 2022.04.25.>
- ③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P를 급제로 하며, 급제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성적은 F가 된다.<개정 2022.04.25.>
- ④ 인성 및 봉사 교과는 1학기 인성학기 주간에 개설한다.<개정 2022.04.25.>
- ⑤ 인성 및 봉사 교과 운영 방법은 운영지침에 따른 계획안에서 정한다.
<개정 2022.04.25.>

⑥ 평가는 교육혁신원에서 취합하여 제공하는 수강생별 평가 근거자료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성적을 부여한다.<개정 2022.04.25.>

제5조(주관부서) ① 인성 및 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은 교육혁신원에서 주관한다.<개정 2022.04.25.>

② 수강생별 각 과정에 대한 평가 근거자료의 취합은 교육혁신원에서 담당한다.

<개정 2022.04.25.>

제6조(재수강) 재수강하는 학생의 이전 활동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.<개정 2022.04.25.>

제7조(지도교수의 역할) 지도교수는 인성학기 운영 기간 내에 인성 및 봉사 교과목의 목적과 학점취득방법을 교육하고,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토록 지도한다.

<개정 2022.04.25.>

제8조(행정) 인성 및 봉사 교과과정을 위한 대외협력, 행정 관리와 시행의 엄정성은 교육혁신원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22.04.25.>

제9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신설 2022.04.25>

부칙(2016. 9. 5.)

이 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4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 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2. 01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